



##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옹호 연합

### 일리노이주 이민자를 위한 의료 관리 혜택

#### HEALTH CARE FOR IMMIGRANTS IN ILLINOIS (Korean version)

*나는 비 시민권자이다.*

*나의 자녀들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능력이 없다.*

*어떻게 하면 되겠는가?*

아동 의료보조 (KIDCARE)는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저 소득 부모들에게 개인 의료 보험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일리노이 주의 프로그램이다.

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은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한 새로 생긴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:

- 미국 입국 시기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나 PRUCOLS\* 해당자; 그리고
- 가족수입이 최저 소득기준의 200% 미만일 경우.

*일리노이주 휴먼서비스국의 케이스워커는 보조를 받는 사람만의 소셜씨큐리티 번호나 이민 신분을 요구할 수 있다.*

\* 일리노이주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. 합법적 영주권자, 피난민자, 망명자,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, 하이티/큐바에서 온 입국자, 호몽이나 하일랜드 라오스인, 특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국가에서 온 자, 출국/추방을 보류받은 자; 특정한 상황하에 구타로 피해 입은 배우자나 그 자녀,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최소 일년간의 가석방을 받은자나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.

PRUCOL 자격자들은 다음과 같다; 임시 집행유예가 허용된자; 추방 명령이 정지, 취소 나 보류된 자; 집행 유예가 허가된 자나 관찰명령의 대상자; 영주권 신청자; 그리고 출신 국가에 상관 없이 모든 망명 신청자.

**모든 저소득층 아동이나 성인은 응급치료와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!**

또한 어느 임신부라도 이민 신분을 막론하고 태아기 의료보조 (Pre-Natal Care), 산후 보조 (Postpartum Care) 와 워크 (WIC) (부녀자, 유아와 아동) 식품 보충물을 다음조항에 해당되는 한 자신과 유아를 위해서 받을 수 있다:

- 최저소득기준 선의 200% 미만일 경우

## 또한 성인들은 다음의 조항에 해당되면, 의료 보조 (MEDICAID)를 받을 수 있다:

-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\*;
- 저소득자 일 경우;
- 부양 자녀들이 있거나, 장애인, 65 세 이상의 연장자, 혹은 임신부일 경우.
- 1996 년 8 월 22 일 이후에 입국한 법적 영주권자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\* 가 된 후 5 년이 경과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된다.

*\*일리노이주의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. 합법적 영주권자, 피난민자, 망명자,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, 하이티/큐바에서 온 입국자, 불법 밀입국 행위의 피해자, 호몽이나 하일랜드 라오스인, 특정 아메리칸 인디안 국가들에서 온 자, 출국/추방을 보류받은 자; 특정 상황에서 구타로 피해입은 배우자나 그 자녀, 1980 년 4 월 1 일 이전에 최소 일년간의 가석방을 받은 자나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.*

의료보조 (MEDICAID),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, 태아기 의료보조 (PRENATAL CARE), 부녀자, 유아와 아동 (WIC) 혹은 어떤 다른 의료 프로그램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지역사회 보건소로 가십시오.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이민 신분 조사없이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의료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.

### **위에서 말한 의료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경우,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것인가?**

- 아니다! 이민국은 당신이나 당신가족이 자격이 되어서 의료보조를 받았을 경우,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1999 년 5 월에 발표했다. 유일한 예외는 장기간 양로원 체류치료에 대한 의료보조를 받을 경우이다.
- 또한, 어떤 종류의 정부보조를 받았다해도 보조를 신청할 때 사실대로만 진술하였다면, 시민권 신청 시 문제될 점이 없다.
- 그러나, 장기 양로원 체류치료를 부담하는 의료보조 (Medicaid), 그리고 필요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 (TANF) 와 같은 현금보조 혹은 사회보장보조금 (SSI)은 다음의 조항에 해당되면, 문제가 될 수도 있다:
  - 만일 당신이 가족일원의 보조금 혜택에만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적 영주권 신청을 할 때;
  - 혹은
  - 만일 당신이 법적 영주권 자로서 처음 5 년 동안 가족일원의 보조금 혜택에만 생계를 의존할 때 당신의 이민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, 이런 경우는 특수한 환경에 한한다.
- 만일 위조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, 이민국 서비스에서는 법적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!

정보가 더 필요하면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 옹호 연합에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  
(312) 332-7360; 팩스: (312) 332-7044; 이메일: [info@icirr.org](mailto:info@icirr.org)